

한다. 바람의 영향은 저주파수 수준이 높으면 별 문제가 없느냐 수준이 낮은 경우는 일반 방풍스크린으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지시치를 읽는데에도 다음의 몇가지를 참고하여야 한다.

- ① 변동이 적은 경우
- ② 여러 소음원때문에 울리는 경우  
    : 최대치를 읽는다.
- ③ 간헐적으로 일어날때  
    : 최대치를 읽고, 그 평균을 낸다.
- ④ 변동이 클때  
    : 피크치를 여러번 읽고 평균을 낸다.

려진 것이 없다. 물리적인 현상은 일반소음과 같다. 다만 사람들이 듣지 못한다라는 것만 다르다. 그러나 보통소음보다 주파수가 커서 지향성(指向性)이 강하고 습도의 영향이 크고 공기전파시의 감쇄가 크다는 특징이 있다.

측정기로서 개발된 것이 있지 않다. 이기기에 쓰이는 마이크로폰은 일반소음측정기의 고주파용 주파수 특성을 갖는 것이 쓰이는데 10~15KHz이하의 음이 측정된다. 아직 규격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이 따른다.

## II. 초음파의 측정

초음파의 경우도 건강에 대한 영향이 별로 알

사례

관계법규의 올바른 적용을 위한 참고서

# 산재보험재심사재결사례

○○중전기(주) 전기공이 축구대회에 회사 조기회 소속으로 참여하여 수비수로 경기에 임하던중 좌측 무릎을 부딪쳐 부상을 입은 경우

(88-263호 88. 10. 17. 취소)

### 재 결 서

#### 재 심 청 구 인

주소 : 울산시 주동구 전하동 550-11

성명 : 최○○

소속 : ○○중전기(주)

#### 원처분을 받은자

주소 : 상 동

성명 : "

소속 : "

#### 원 처 분 청

울산지방노동사무소장

#### 주 문

울산지방노동사무소장이 1988. 6. 7.자

“최○○”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이 유

재심사 청구인 최○○(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 취지는 울산지방 노동사무소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1988. 6. 7자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불승인 적용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청구인은 ○○중전기(주) 변압기 생산공장 소속 근로자로서 1988. 4. 10 동울산지역 조기축구연합회 주최 축구대회에서 ○○중전기(주) 대표팀으로 출전하여 수비수로 경기에 임하던 중 상대팀 공격수와 충돌로 인하여 피재되어 상병명 “좌측슬관절 슬개골 골절(비전이성)”로 해성병원에 입원가료중 원처분청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던 바, 원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회사축구 동호인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모임이며 사업주의 연간 서클활동 지원계획에 의거 일요일에 외부단체가 주최하는 축구대회에 업무와 관계없이 사외에서 서클활동중에 발생한 재해임으로 업무외 재해로 판단 요양불승인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심사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은 원처분청의 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면서 사업주의 지원하에 회사 대표로 축구대회에 출전하여 경기중 피재되었음으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재심사 청구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이냐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당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서는 이건의 쟁점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 및 이유서(1988. 7 최○○)
2. 원처분청 의견서(1988. 8. 13 울산지방 노동사무소장)
3.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 결정서(1988. 7. 22 박○○)
4. 진단서 사본(1988. 4. 20 해성병원 의사 정○○)
5. 확인서 사본(1988. 5. 19 ○○중전기(주)대표이사 한○○)
6. 심사청구서 보완 사본(1988. 7. 1 ○○중전기(주)대표이사 한○○)
7. 안전사고 보고서 사본(1988. 4. 12 ○○중전기(주)대표이사 한○○)
8. 88년도 서클 지원금 확정통보(1988. 1. 28 ○○중전기(주)총무부장)
9. 요양신청서 사본(1988. 4 최○○)
10. 조사복명서 사본(1988. 조사서 김○○)
11. 목격자 진술서 사본(1988. 4. 11 윤○○)

## 12. 기타

이상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건의 쟁점을 심리하건대, 청구인은 ○○중전기(주) 생산공장 소속 근로자로서 1988. 4. 10 동울산지역 조기축구연합회 주최 축구대회에서 ○○중전기(주)대표팀으로 출전하여 수비수로 경기에 임하던 중 상대팀 공격수와 충돌로 인하여 피재되어 상병명 “좌측슬관절 슬개골 골절(비전이성)”로 해성병원에 입원 가료중 원처분청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던 바 원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회사축구 동호인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모임이며 사업주의 연간 서클활동 지원계획에 의거 일요일에 외부단체가 주최하는 축구대회에 업무와 관계없이 사외에서 서클활동중에 발생한 재해임으로 업무외 재해로 판단 요양불승인 처분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사업주의 지원하에 회사대표팀으로 축구경기중 피재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피재

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느냐의 여부, 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 피재자는 ○○중전기(주) 생산공장 소속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주관하는 근로자 서클활동 단체인 축구조기회 회원으로서 1988. 4. 10 동울산지역 조기축구연합회 주최 축구대회에서 ○○중전기(주) 대표팀으로 출전경기 중 수비수로서 상대팀 공격수와 충돌로 인하여 피재되어 상병명 “최측 슬관절 슬개골 골절”로 해성병원에서 입원 가료하였고,

둘째 : 동○○중전기(주)의 근로자 서클활동단체인 축구조기회는 회사 12개 취미서클중의 1개로서 근로자의 건강증진 및 사기양양, 노사협조등 노무관리 차원에서 연간 서클지원 경비 50만원외에 경기가 있

을 때는 업무시간을 할애하여 연습시간을 부여하고, 기타 경비 및 운동기구등도 지원하고 있고 동 재해와 관련하여 축구대회에 출전한 팀은 회사 대표팀임이 명백하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때 동 축구조기회는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와는 성질상 다르다 할 것이나 회사는 근로자의 건강증진 및 사기양양, 노사협조등 노무관리 차원에서 경비를 지원할 뿐아니라 경기가 있을 때는 미리 업무시간 등을 할애하면서까지 연습시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아 사적행위로 볼 수 없고 이는 업무에 부수되는 정당한 행위중 피재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은 부당하며 이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전자(주)전자수리공이 V.T.R을 들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고 상병명 “제5 요추 척추분리증”이 발생한 경우

(88-186호 88. 10. 17 취소)

## 재 결 서

재심 청구인

주소 :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성명 : 한○○

소속 : ○○전자(주)

원처분을 받은자

주소 : 상 동

성명 : ”

소속 : ”

원 처 분 청

서울지방노동청장

## 주 문

서울지방노동청장이 1988. 7. 18자 “한○○”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이 유

재심사 청구인 한○○(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취지는 서울지방노동청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1988. 7. 18자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청구인은 ○○전자(주)전자수리공으로서 1988. 4. 4 V.T.R을 수리하려고 들어 올리다 허리에 부상을 입고 상병명 “제5 요추 척추분리증, 요부 염좌”로 성심의원에서 요양증 원처분청에 요양신청하였던바 원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요양상병인 척추분리증은 대개 선천성의 기존질환으로 사료되며 정상인에게서도 약 20%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외상에 의한 것이라는 의학적 근거가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외상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선천성 기존질환이라는

이유로 업무외 재해로 판단하여 요양불승인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심사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상병은 기존질병으로 인정될뿐 재해 당시의 작업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의학적 근거가 희박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고 재해당시 회사 사무실내에서 작업중에 부상을 입었음에도 업무외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불승인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심사청구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부상이 업무상이냐의 여부에 있다하겠으므로 당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서는 이건의 쟁점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서(1988. 8. 26 한○○)
  2. 원처분청 의견서(1988. 9. 5 서울지방노동청장)
  3. 심사관 결정서 사본(1988. 7. 18 오○○)
  4. 요양결정 결의서 사본(1988. 5. 30 서울지방노동청장)
  5. 소견서(1988. 4. 11 성심의원장)
  6. 진단서(1988. 8. 17 성심의원장)
  7. 소견서(1988. 7. 6 노동부 본부 자문의)
  8. 자술서(임○○, 이○○)
  9. 서비스 활동 현황(1988. 3. 4~4. 4)
  10. 기타
- 이상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건을 심리하건대, 청구인은 ○○전자(주)전자수리공으로

로서 1988. 4. 4 V.T.R을 수리하려고 들어 올리다 허리에 부상을 입고 상병명 “제5요추 척추분리증, 요부염좌”로 성심의원에서 요양증 원처분청에 요양신청하였던바 원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요양상병인 척추 분리증이 의상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선천성 기존 질환이라는 이유로 업무외 재해로 판단하여 요양불승인 처분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회사 사무실내에서 작업중에 부상을 입었는데 요양불승인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청구인은 1987. 7. 1 서비스 센터에 부임한 기술사원으로 08:30시에 출근하여 19:00시까지 텔레비전, 오디오, 세탁기, 냉장고, 비디오 등의 하자부분을 수리하는 작업을 반복해서 하는 작업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1988. 3. 4부터 1988. 4. 4까지 1개월간의 서비스 활동 현황을 보면 텔레비전, 오디오 등 제품 151점을 수리하였으며 1988. 3. 21부터는 재해일까지 하루도 빠짐없는 매일 수리작업을 하였으며 특히 사고일 이전 3일간에는 26점에 달하는 제품을 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해당일에도 8점의 제품을 수리하다가 부상을 입었음이 확인되는 바 이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 텔레비전, 오디오등 무거운 물건을 운반수리한 작업을 반복하므로서 특히 재해발생일 전 3일간은 평소작업에 비하여 더욱 많은 수량의 무거운 물건을 운반 수리한 작업이 발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요양불승인 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이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